

식품위생법규개정 주요내용

최 성 락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사무관

과거의 식품위생관리제도는 국민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세부사항을 정부가 정하여 규제하는 사전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관리제도는 60~70년대 식품산업이 낙후되어 업체의 위생관리능력이 미흡하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제도였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시점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하고 질높은 식품을 생산·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위생관리제도를 식품 안전성을 보다 실효성있게 확보하면서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4~'95년에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영업허가제도가 식품제조·가공업 하나로 통합되고, 품목제조허가(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식품위생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5.12.29.에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서 위임된 사항과 몇가지 개선·보완된 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96.10.14) 주요내용

가. 제품검사대상 조정(제3조)

- 인삼사업법이 개정되어 홍삼제품을 모 든 영업자가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삼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품검사대상으로 추가하고
- 인삼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검사의 실효성이 없는 인삼과자류 및 인삼통·병조림류를 제품검사대상에서 제외

나. 식품등의 재검사(제3조의2)

- 식품등에 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는 당초 검사에 있어 그 취급 및 검사방법이 고시된 각종 규격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① 당해 영업자에게 검사결과와 통보가 특히 필요한 때(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이내에 통보)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이 2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때

② 재검사 실시(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재검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통보)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방법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방법 또는 검사과정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검사결과 통보(재검사의 실시를 통보한 날부터 18일이내)

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등(제6조의2)

○ 명예감시원의 위촉

-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 식품관련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 명예감시원의 업무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기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등

라. 편의점등의 단순조리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허가 완화(제7조)

- 영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등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제11조)

- 식품제조·가공업 :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

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종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식품첨가물제조업 :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바. 식품군별 식품위생관리인의 구분등(제15조)

-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통·폐합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인을 제조·가공하는 식품군별로 구분하여 두도록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을 업종·규모·생산제품별로 정리

① 1종식품위생관리인

- 통조림 또는 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② 1종 또는 2종식품위생관리인

- 1종식품위생관리인 대상식품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 화학적 합성품외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

-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안에서 절임식품류 또는 면류(인스턴트면류 제외)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 1종식품위생관리인 대상식품외의 식품을 상시 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
- 농어민 등으로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사.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방법(제34조의2)

→ 食品等回收및公表에關한規則 참조

- 아.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 확대(제42조)
 -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우수업소·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 과태료부과금액의 조정등(제54조 관련 별표2)
 -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100만원) <신설>
 -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30만원)
 -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영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30만원)
 - 시설의 개수명령에 위반한 영업자(50→100만원)·건축물 소유자(30→50만원)
 - 집단급식소 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50→100만원)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96.12.20)
주요내용

-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제4조)
 - 식품위생법이 개정('95.12.29)되어 자가기준 및 규격이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 식품등의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다양한 신제품의 개발이 예상되는 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하여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
- 나. 제품검사 불합격품의 처리방법 마련(제9조)
 - 경미한 성분규격 위반으로 불합격된 경우 재가공후 다시 검사 신청
 -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유독·유해물질의 검출등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규격을 위반한 경우 폐기처분(법 제56조)

- 다. 부패과실 선별작업 개선(제11조)
 - 신선한 과실·채소류의 신속한 통관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썩었거나 상한 과실·채소류의 선별작업을 협소한 보세창고에서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수입판매업자가 선별·폐기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라. 수입식품 검사절차의 개선(제11조 관련 별표6)
 - 종래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서류·관능·정밀검사로 엄격히 구분하였으나, 서류·관능검사 대상중에서도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 개선
 - ※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서류검사 대상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를 포함)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식품등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 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첨가물. 이 경우 제품검사성적서는 수입통관후 제출할 수 있다.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

- 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함)
-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함)
 -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 농·임·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3월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 관능검사 대상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
 - 서류검사의 대상중 지방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7에서 정한 수거량의 5배이하인 식품등
- 정밀검사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동일사 동일식품등중 정밀검사를 받았던 날부터

- 3월이 경과한 농·임·수산물 포함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등(식품첨가물은 제외)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
 -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등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제11조 관련 별표 6)
-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용기·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 등을 당초 수입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바. 출입·검사 의무규정 삭제(제12조)
- 식품제조업소 및接客업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출입·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자의 불편 초래
 - 연 1회이상 출입·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출입·검사 실시
- 사.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제19조)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는 모든 영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 제품검사를 받은 식품등은 제외
- ①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
 - ②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
 - ③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 항목에 한함.
 - ④ 별표 9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건과류·검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건면류·생면류·숙면류·고추가루·실고추·천연향신료·도시락·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단순절단포장육)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자
 - 성상·이물 : 1월마다 2회이상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이상
 - ⑤ ④이외의 식품
 - 성상·이물 :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 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 : 6월마다 1회이상
 - 항생물질등·농약·아플라톡신·마비성 패독 : 1년마다 1회이상

※ 원료검사시 당해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⑥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 제조업자
 -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기구 또는 용기·포장별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⑦ 원료 또는 용기·포장
 - 품목별로 2월마다 1회이상(당해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경우, 식품위생검

- 사기관 및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를 제외)
-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1호 '97.1.4) 참고
- 아. 영업허가신청시의 구비서류 변경(제22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추가
 -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출
 - 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 확대(제24조의2 관련 별표 11)
 - 간단한 제조·가공시설로도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빙과류, 분쇄가공품(햄버거패티류·돈가스류등), 젓갈류·조림류, 고추가루·실고추, 추출가공식품(붕어즙등), 순대류 등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식품에 추가
 - 차.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제2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중 제품명 또는 주원료(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카. 식품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제40조 관련 별표12 및 제42조 관련 별표13)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 식품에 한함)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하여 동 식품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 타.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의 우수업소 지정(제43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중 제

조시설 및 위생관리상태등이 좋은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동업소의 제품에는 “우수업소제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파. 행정처분기준의 조정(제53조 관련 별표 15)

-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법 제4조 내지 제11조,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 유통전문판매영업자를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당해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영업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허가취소(과징금부과 제외)→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월, 3차 2월(1차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
- 사전광고심의 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 위해식품 회수·공표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월, 2차 2월, 3차 3월
- 우유등의 항생물질 검출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서 제외
-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신설)

행정처분기준 변경사항

1. 개별기준 변경사항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강화)	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15일과 당해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7일→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
○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완화)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1월
○ 무게·중량·갯수 등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완화)	품목제조정지 3월→품목제조정지 2월	품목제조금지→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류제조정지 3월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강화)	품목류제조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품목류제조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품목류제조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것 (완화)	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1월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검사합격증지를 해당 용도외의 타제품에 사용한 것(완화)	영업정지 3월→품목제조정지 1월	영업정지 3월→품목제조정지 2월	영업허가 취소→품목제조정지 3월
○ 제품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것(완화)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7일	품목제조정지 1월→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2월→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신설)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 제품명·주원료 또는 유통기간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완화)	품목제조정지 1월→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2월→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3월→품목제조정지 2월
○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완화)	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15일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결과 부적합한 광고문안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신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 위해식품등의 회수명령에 위반한 때(신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신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2. 과징금 부과 관련 변경사항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를 한 때
-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광고문안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 위해식품등의 회수명령에 위반한 때

-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 과징금 부과대상

- 향생물질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